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여 수 세 계 박 랑 회 기 념 및
사 후 활 용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활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058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주체 변경, 사후활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 변경 등(안 제3조 등)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을 삭제함

나.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안 제11조)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의 박람회 사후활용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후활용계획 수립기준을 공공개발 취지에 맞게 일부 변경함

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 및 구성 등(안 제11조의2)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사후활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라.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방법 개선(안 제13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2023. 1.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을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제3호다목”을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해양박람회특구 내 소유한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을 “(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단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를 “공사는 법 제5조”로, “보조금을”을 “보조금 등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을 “공사는”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포함

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3. 민간투자 유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공공개발 방향 설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토지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저관광 및 문화·예술, 해양수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도시자”를 “도지사”로,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 법 제4조제3항제3호다목</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u>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u>	<u>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u>----- ----- -----. 1. (현행과 같음) 2. 「<u>항만공사법</u>」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u>해양박람회특구 내 소유한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u>
<u>제4조(국가 출연금의 지급) ① 국가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재단에 지급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5조(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u>	<u><삭 제></u>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
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재단은 법 제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
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
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운용·관리) ① 재
단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
원을 운용·관리한다.

②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재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
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
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재원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법 제
7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제6조(보조금 등) 공사는 법 제5
조----- 보조금 등을 --

----- 제출해야
-----.

<삭 제>

<삭 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자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삭 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
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0
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
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
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
에 따른 감사반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재단은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삭 제>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공사는 -----

--- 고려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3. 민간투자 유치를 포함한 종
합적인 공공개발 방향

4.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4.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4조 제3항-----

----- 포함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 등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

<신 설>

는 공무원 각 1명

2. 토지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
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3.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
저관광 및 문화·예술, 해양수
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
명한다.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 3. (생략)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u>도시자</u> 및 시장에게 <u>서면</u>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 <u>도시자</u> ----- <u>서면 또는 전자적</u> <u>방법</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29